# CCTV 운영·관리방침

제정: 2012.03.23 최근개정: 2017.04.28

#### 제 1 조 (목적)

본 CCTV 운영•관리방침(이하 "방침"이라 한다)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25 조 및 관련조항에 따라 신한아이타스(이하 "회사"라 함)가 준수하여야 하는 CCTV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)

- ① 회사는 CCTV 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 집하고, 이와 같은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,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.
- ②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,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,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.

#### 제 3 조 (설치 대수,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)

회사는 CCTV를 아래와 같이 설치•운영하고 있다.

1. 설치 대수 : 총 15 대

2. 설치 위치 : 회사 출입구 및 주요 시설 3. 촬영 범위 : 회사 내 동선 및 출입문

#### 제 4 조 (관리책임자,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)

회사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자,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 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.

①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.

	개인영상정보보호최고책임자	개인영상정보관리자
소속	준법지원실 윤진국 실장	준법지원실신익준
전화번호	02-2180-0412	02-2180-0476
이메일	jkyun@shinhan.com	ijshin@shinhan.com

- ② 회사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•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판을 설치•운영하고 있다.
- 1. 안내판은 촬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.
- 2. 회사에는 다수의 CCTV 가 설치되어 있어 회사 전체가 영상정보기기 설치 지역임을 명

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 부착한다.



# CCTV 설치안내문

설치목적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관리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/ 녹화 촬영범위 사무실 및 로비 입구 책 임 자 준법지원실 실장

신한아이타스 경영지원실

준법지원실 신익준 (☎ 2180-0476)

### 제 5조(개인영상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책임 및 역할)(신설)

담 당 자

- ① 개인영상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회사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- 1.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2.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- 3.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
- 4.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남용·오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구축
- 5.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
- 6.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·감독
- 7.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
#### 제 6 조 (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)

CCTV 의 촬영시간, 보존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영상정보의 촬영시간
- 1. 24 시간(정전및기타정비를위한시간제외)
- ② 영상정보의 보관기간
- 1. 최소 30 일이상녹화장치의저장용량범위내에서보관하며, 최대 180 일(6 개월) 이내로함.
- 2. 단, 회사의운영및사건, 사고등의처리를위하여보존이필요한경우에는해당부분만별도관리 할수있음.
- ③ 영상정보의 보관장소

- 1. CCTV 모니터링및녹화기설치장소인전산실
- ④ 영상정보의 처리방법
- 1. 영상정보의보관은녹화장치(DVR) 하드디스크에보관
- 2. 저장된화상정보는녹화장치(DVR) 저장용량에따라자동삭제
- 3. 개인영상정보가기록된출력물(사진등) 등은파쇄또는소각

# 제 7 조 (CCTV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)

회사는 CCTV 에 의하여 전송 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•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,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•재생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. 단, 열람•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•재생할 수 있다.

	개인영상정보보호최고책임자
영상정보 접근권한자	개인영상정보보호관리자
	개인영상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은자

## 제 8 조 (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)

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개인영상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.
- ②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회사에 요구(청구)할 수 있다
- ③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,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 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•운전면허증•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10 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.
- 1. 범죄수사•공소유지•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⑤ 정보주체는 회사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. 단,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.

# 제 9 조 (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•관리적 및 물리적조치)

회사는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•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.

-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•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-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•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•재생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전보,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 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⑤ 회사는 설치목적 범위를 넘은 카메라의 임의 조작을 금지하여야 한다.

### 제 10 조 (영상정보의 관리)

- ①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「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」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1.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- 2.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
- 3.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- 4.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
- 5.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
- 6.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- ②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「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」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1.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항목 (날짜 및 시간)
- 2.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
- 3.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

#### 제 11 조 (보관 및 파기)

- ① 회사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CCTV 운영•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 단, 회사의 운영 및 사건, 사고 등의 처리를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파기하지 않고 별도 관리할 수 있다.
-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아래와 같다.
- 1. 저장된 영상정보는 녹화장치(DVR) 저장용량에 따라 자동 삭제

2.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(사진 등) 등은 파쇄 또는 소각

# 제 12 조 (CCTV 운영•관리 방침의 고지에 관한 사항)

회사의 CCTV 운영•관리 방침은 회사 내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.

# 부칙 (2012.03.26)

(시행일) 이 방침은 2012.03.26 부터 시행한다.

# 부칙 (2014.05.08)

(시행일) 이 방침은 2014.05.08 부터 시행한다.

# 부칙 (2015.04.06)

(시행일) 이 방침은 2015.04.06 부터 시행한다.

# 부칙 (2017.04.28)

(시행일) 이 방침은 2017.04.28 부터 시행한다.